

1. 개정이유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강의실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도시농업 공동체 등록기준 중 곤충사육 규모를 현행보다 축소하는 등 규제 입증책임제 법령 정비에 따라 ‘20년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규제를 개선하여 도시농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자구 수정으로 조문의 의미 명확화(안 제3조제3항, 안 제5조제3항)

1) (현행) 신청내용이 내용이 별표 1 → (개정) 신청내용이 별표 1

2) (현행) 신청내용내용이 → (개정) 신청내용이

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강의실 면적 기준 삭제(안 별표1)

1) 도시농업지원센터의 교육 및 실습을 위한 시설 기준 중 “강의실 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을 “강의실 ”로 변경하여 지정기준 완화

다. 도시농업공동체의 곤충사육 규모 기준 완화(안 별표3)

1) 도시농업인이 취미·여가·학습·체험의 목적으로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도시농업공동체 등록기준 중 곤충사육 기준이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육규모와 동일하여 현행 1/2수준으로 등록기준 완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내용이 별표 1”을 “별표 1”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신청내용내용”을 “신청내용”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강의실

별표 3 구분의 곤충사육란 곤충사육의 물방개류, 사슴벌레류, 하늘소류, 풍뎅이류, 나비류, 반딧불이류, 수서곤충류 중 1종 이상란의 500마리 이상란 중 “500마리”를 “250마리”로 하고, 같은 표 매미류, 꽃무지류, 노린재류, 메뚜기류, 여치류 중 1종 이상의 250마리 이상란 중 “1,000마리이상”을 “500마리이상”으로 하며, 같은 표 귀뚜라미류의 250마리 이상란 중 “15,000마리”를 “7,500마리”로 하고, 같은 표 개미류의 250마리 이상란 중 “6군체”를 “3군체”로 하며, 같은 란의 500마리 이상란 중 “500마리”를 “250마리”로 하고, 같은 표 매미류, 꽃무지류, 노린재류, 메뚜기류, 여치류 중 1종 이상의 250마리 이상란 중 “1,000마리이상”을 “500마리이상”으로 하며, 같은 표 귀뚜라미류의 250마리 이상란 중 “15,000마리”를

“7,500마리”로 하고, 같은 표 개미류의 250마리 이상란 중 “6군체”를 “3군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농업공동체 등록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제3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 · 도 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지원 센터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u>내용이 별표 1</u> 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 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 다.	③ ----- ----- ----- ----- ----- <u>별표 1</u> -----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 · 도 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u>신청내용내용</u> 이 별표 2의 전 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적 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 ----- ----- ----- -- <u>신청내용</u> ----- ----- ----- ----- ---.

④ (생 략)

부칙

< 신 설 >

[별표 1]

도시농업지원센터지정기준(제3조제3항 관련)

1. (생략)

2. 교육 및 실습을 위한 시설

가. 강의실 : 50제곱미터 이상

나. ~ 마. (생략)

3. ~ 5.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농업공동체 등록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도시농업지원센터지정기준(제3조제3항 관련)

1. (현행과 같음)

2. 교육 및 실습을 위한 시설

가. 강의실

나. ~ 마. (현행과 같음)

3. ~ 5. (현행과 같음)

[별표 3]
도시농업공동체의 운영규모 기준(제7조제1
항제2호 관련)

구 분	운영규모 기준
텃 밭	100제곱미터 이상
곤충 사육	물방개류, 사슴벌레류, 하늘소류, 풍뎅이류, 나비류, 반딧불이류, 수서곤충류 중 1종 이상 <u>500마리</u> 이상
	매미류, 꽃무지류, 노린재류, 메뚜기류, 여치류 중 1종 이상 <u>1,000마리</u> 이상
	귀뚜라미류 <u>15,000마리</u> 이상
	개미류 <u>6군체</u> 이상
양 봉	봉군(꿀벌 1~2만 마리 기준) 5개 이상

[별표 3]
도시농업공동체의 운영규모 기준(제7조제1
항제2호 관련)

구 분	운영규모 기준
텃 밭	100제곱미터 이상
곤충 사육	물방개류, 사슴벌레류, 하늘소류, 풍뎅이류, 나비류, 반딧불이류, 수서곤충류 중 1종 이상 <u>250마리</u> 이상
	매미류, 꽃무지류, 노린재류, 메뚜기류, 여치류 중 1종 이상 <u>500마리</u> 이상
	귀뚜라미류 <u>7,500마리</u> 이상
	개미류 <u>3군체</u> 이상
양 봉	봉군(꿀벌 1~2만 마리 기준) 5개 이상